

문서번호: ASCoF/

시행일자: 2008년 9월 20일

발 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 유:

수 신: 회장

참 조: 총무이사

선 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작성자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9년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개정안 제출

1. 2009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위 원 장 : 박용향
 위 원 (가나다순) : 김세중
 이수연
 최경일
 최성우
 최용준

2. 2009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회칙 개정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자격의 정의
-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방법
- (3) 수탁사업/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수입 및 배분 문제
- (4) 기타

3. 상기 요건에 따라 첨부 1과 같이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이에, 첨부 2와 같이 최종 개정안 및 주석을 제출합니다.

2009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용향



첨부 1. 2009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일시	내용
6월 13일	1 차 회의 참석자: 박용향, 김세종, 최경일, 최성우, 최용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개정 권고안 검토 • 각 항별 검토후 1 차 개정안 완료
6월 23일까지	1 차 개정안 추가 검토 및 의견 접수
7월 4일	2 차 회의 참석자: 김세종, 이수연, 최경일, 최성우, 최용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차 개정안 항목별 검토 및 재수정 • 2 차 개정안 완료
7월 10일까지	2 차 개정안 추가 검토 및 의견 접수
9월 12일	3 차 회의 참석자: 박용향, 김세종, 최경일, 최성우, 최용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차 개정안 항목별 검토 및 재수정 • 최종 개정안 완료

2009년 회칙 개정 주요 세부 안건

내용	문제점	보완방향
회원자격 및 정회원의 기준	예를 들러, 단기 체류기간 동안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갖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정회원을 석사과정 이상이나 1년이상 협회 가입자 등으로 상향 조정. 학생회원 제도 신설 (선거권 미부여)등
회장 후보의 제한	현재 부회장만 회장후보가 되는 조항의 완화가 필요	부회장의 회장 후보권은 유지하되 자격이 되는 정회원도 회장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개정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향후 4년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임	과협에의서의 과거 활동 내역이나 정회원 유지 경력 (예, 4년)으로 개정
기타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 의견 제시 요망	단어, 문법, 오타자 등 수정

첨부 2

2009년 회칙 개정안

다음과 같이 2009년 회칙 개정안 및 주석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 박용향



위원(가나다순) : 김세종



이수연



최경일



최성우



최용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제 1항 본 협회는 프랑스 협회법 (Loi du 1er juillet 1901) 에 의거하여 등록된 단체이다.
- 제 2항 본 협회의 명칭은 재불한국과학기술자협회 (在佛韓國科學技術者協會,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éens en France, 약칭 재불과협, 在佛科協, ASCoF), 이하 협회라 칭한다.

의견

- *오타자: 1ére 는 1er로 정정.*

제 2 조 목적

- 제 1 항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교류를 증대한다.
- 제 2 항 한국 과학기술계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 제 3 항 한불 양국간의 과학기술 교류에 기여한다.

제 3 조 소재지

- 제 1 항 본 협회의 등록소재지는 파리(Paris)에 둔다.

주석

- "협회법상"이라는 단어가 재불과협의 회칙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삭제함.

제 4 조 사업연도

- 제 1 항 본 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분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 1 항 정회원은 프랑스와 불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
- (가) 대학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
 - (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
 - (다) 과학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제 2 항 준회원은 프랑스와 불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
- (가) 과학기술 분야 대학 과정을 이수중인 자.

(나) 재불과협 및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협회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자.

(다)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

제 3 항 명예회원

과학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본 협회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받은 자.

제 4 항 특별회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받은 기업 또는 기관.

주석

- 제 1 항에 정회원의 기준을 강화하고 단기 체류 및 협회 목적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일반인 등에게 준회원의 권한을 부여함. 또한 정회원만(피)선거권 및 투표권을 부여함.
- 과거의 경력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회원 권한 부여.
- 대학과정이라 함은 4년제 대학, 전문대 및 프랑스 그랑제콜을 모두 포함한다.
- 비이공계 대학 졸업후 현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경우는 정회원이 된다.
- 이공계 대학 졸업후 현 과학기술계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준회원은 가능).
-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 학생은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기존 “기능소지자”를 삭제하여 실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즉,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라도 과학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경우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제 2 항에 준회원의 경우(피)선거권, 투표권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정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준회원으로 분류된다.
- 연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정회원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존 회칙의 “자동탈퇴”에서 완화한 것임.
- 원로의 경우 명예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됨.
- OB의 경우는 회칙상 현 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음. 단, 동문으로서의 명단을 유지할 수 있음.

제 6 조 입회 및 탈퇴

제 1 항 입회는 입회원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성립한다.

제 2 항 탈퇴는 본인이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여 성립된다.

주석

- 제2항에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삭제. 정회원의 2년 이상 연회비 미납부는 준회원으로의 강등으로 변경.
- 제2항에 기존 “서명”은 “서면”의 오타자로 보이며, 전자우편(이메일)을 고려하여 “문서”라는 단어로 변경.

제 7 조 권리와 의무

- 제 1 항 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2 항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은 정회원에 국한한다.
 제 3항 회원은 본 협회의 회칙 및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항 정회원은 본 회칙 17조에 명시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석

- 모든 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도 협회의 의사 결정 절차(총회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의 행사는 정회원으로 국한한다.
- 연회비 납부의 의무도 정회원으로 국한한다. 기존의 “소정의”는 불필요한 단어로 삭제한다.

제 8 조 징계 및 제명

- 제 1 항 본 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하여 심의한 후, 징계 및 제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회원과 감사에게 통보한다.
 제 2 항 감사는 징계 및 제명에 대한 결과를 총회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주석

- 제1항에 반복 문구 “본 협회”를 삭제. “이름” 삭제
- 제1항에 주어를 문두에 배치하고 “결정”이 아닌 “결과”를 보고함.
- 제1항에 “회장의 동의를 거쳐”를 삭제.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회장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 또한, 회장 본인의 징계 및 제명의 경우도 수정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
- 제1항에 “회장은 결정”을 삭제. 즉, 징계 및 제명에 대한 결정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해당 회원 및 감사에게 통보된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 기구

제 1 항 본 협회의 기구는 ㉠집행부 ㉡지역회 ㉢전문분과 ㉣감사 그리고 ㉤특별위원회이다.

주석

- 주어 “본 협회의 기구는”을 문두에 배치.

제 10 조 집행부

제 1 항 집행부는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 항 구성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편집이사, 전산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들은 필요에 따라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제 3 항 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

- (가)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 또는 프랑스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직업을 갖고 종사하며, 후보 등록 당시까지 정회원으로 4년 이상 연속 활동한 자.
- (나) 부회장 후보는 프랑스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직업을 갖고 종사하며, 후보 등록 당시까지 정회원으로 2년 이상 연속 활동한 자.

제 4 항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제 5 항 회장 및 부회장 선출

- (가)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단,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인준한다.
- (나) 당해년도 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6 항 회장 및 부회장 임기

- (가)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나)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항 회장 및 부회장 임무

- (가)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나) 회장은 집행부 운영을 통해 총회 의결 사항, 협회의 모든 사업 및 대내외 활동을 총괄 책임하여 집행하며, 그 집행 내역을 회원에게 수시로 알린다.
- (다) 회장은 지역회 및 전문분과의 구성을 결정한다.
- (라)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며, 차기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 8 항 이사의 임기 및 임무

- (가) 이사들은 부회장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 (나) 이사들의 임무는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주석

- 제2항에 현 “1인 또는 2인” 부회장을 삭제. 협회의 조직은 회장1인, 부회장 1인으로 한다. 부회장 유고시 운영위원회가 그 후속 조치를 한다.
- 제3항의 회장 및 부회장 자격을 구분함. 회장 후보 자격을 완화하나, 과거 협회 활동 경력을 확인 후 후보로 인정함. 부회장의 경우도 과거의 협회 활동 경력을 확인함.
- 현부회장의 회장 후보 자격은 유지함.
- 현부회장만 후보가 되는 기존5항(가)항을 삭제.
- 제5항(나)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다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므로 “인준”이 아닌 “선출”이 정확한 표현임.
- 제6항에 부회장의 연임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회장 및 부회장 모두의 선출 절차가 동일하므로 기존6항(라) 삭제.
- “일인”은 “1인”으로 회칙 전체에 걸쳐 표기 방법 통일
- 회장후보 자격조건의 완화로 기존7항(라) 삭제
- 제8항에 부회장도 이사진을 임명할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회장 및 부회장 협력으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 11 조 지역회

- 제 1 항 지역회의 구성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 제 2 항 지역회는 본 회칙 2 조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
- 제 3 항 지역회 대표는 각 지역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 4 항 기타 지역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제 12 조 전문 분과

- 제 1 항 전문분과의 구성은 공통성이 있는 분야를 규합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 제 2 항 전문분과는 본 회칙 2 조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
- 제 3 항 전문분과장은 각 전문분과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 4 항 기타전문분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제 13 조 감사

- 제 1 항 본 협회는 1 인의 감사를 둔다.
- 제 2 항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최다수 득표로 선출되며, 감사 후보는 본 협회에서 정회원으로 2 년 이상 활동한 자이다.

제 3 항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제 4 항 감사는 해당 사업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 회 사업 및 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항 감사는 필요시 회장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석

- 제1 항에 “1명” 은 “1인”으로 변경. 전회칙에 표기 방법 동일.
- 제2 항에 “참석 정회원의” 삽입. 정회원만 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4 항에 감사의 의무에 “사업 및 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제4 항에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은 “그”로 대체.

제 14 조 특별위원회

제 1 항 본 협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2 항 기타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시 결정한다.

제 4 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 15 조 총회

제 1 항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심의 의결 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 2 항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장의 명의로, 개최 30 일전 공고를 통해 소집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가) 회칙의 수정 및 개정
-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 (다) 특별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인준
- (라) 차기 사업연도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인준
- (마) 총회년도 사업 및 예산 결산

제 3 항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서명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 하였을때, 회장의 명의로 소집되며, 소집공고에 명시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주석

- 제2 항(가)에 “변경”을 “개정”으로 변경. “수정”은 오탈자, 문법상의 변경이고 “개정”은 내용상의 변경을 뜻함.
- 제2 항(마)에 “사업결산 및 예산결산”은 “사업 및 예산 결산”으로 변경
- 제3 항에 “15인”이 현재 협회의 규모에 비해 너무 적으므로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을 정회원 “15인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변경.

제 16 조 운영위원회

- 제 1 항 운영위원회는 상임, 심의, 의결 기관이다.
- 제 2 항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지역회대표, 전문분과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제 3 항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1 회 이상 회장 발의로 소집되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된다.
- (가)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 될 수 있다.
- 제 4 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나) 협회운영, 사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결.
- (다) 시행세칙의 제정 및 수정.
- (라) 회원관리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천.
- (마) 연회비 결정.
- (바) 차기 회장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 차기 회장 당선자가 없을 시, 차기 회장 후보자를 추천.
- (사) 감사 및 부회장 유고시 대행 결정

주석

- 제 3 항의 경우, 제 2 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장” 으로 변경.
- 제 3 항에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된다.” 삽입. 운영위원회가 전체 운영위원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함.
- 제 3 항 (가)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삽입. 협회의 유지와 회장 유고시와 같은 긴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개최 가능 조건을 다양화 함.
- 제 3 항에 “(바) 감사 및 부회장 유고시 대행 결정” 삽입.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나 부회장도 유고시(또는 부회장 유고시) 그 대행 선발 및 대행 기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감사도 동일.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재정

- 제 1 항 본 협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항 정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찬조금으로 대신한다.

제 3 항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제 4 항 본 협회의 수익 사업은 프랑스 협회법 (Loi du 1er juillet 1901)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제 5 항 수익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주석

- 제 4 항 삽입. 2008년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프랑스 협회법상의 수익사업에 관한 의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금하되 협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시행하는 프랑스 협회법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 제 5 항 삽입. 시행세칙에 반드시 수익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이 존재하도록 회칙에서 규정한다. 프랑스 협회법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도록 2009년 회칙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다.
 -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 절차(심의 절차, 예산사용 등)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집행부, 운영위원회등의 결정, 사업비 규모에 따른 보고 및 행정 단계, 사업중간 보고 및 심의, 계약/세금/해지 등에 관한 세부내용 등)

제 6 장 회칙 개정, 시행세칙 결정 및 협회의 해체

제 18 조 회칙 개정 및 시행세칙 결정

- 제 1 항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칙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
 특별위원회에서 회칙개정안을 논의, 확정하고, 총회 개최 30 일전에 모든 정회원에게 공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제 2 항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회장은 제정 또는 수정된 시행세칙을 30 일 이내에 모든 회원들에게 공표한다.

제 19 조 협회의 해산

- 제 1 항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 2 항 해산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어야 하며, 참가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3 항 해산시 본 협회의 자산은 프랑스협회법 9 항 (Article 9 de la loi 1901) 에의거,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적인 일반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1976 년 제정, 1978 년 6 월 개정, 1980 년 10 월 개정, 1984 년 4 월 개정, 1987 년 3 월 개정,
1991 년 11 월 개정, 2003 년 10 월 개정, 2009년 11월 개정”

주석

- “2009년 11월 개정” 삽입